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세칙 신규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공지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 명칭 변경
제2조(명칭) 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연구소(POSTECH Information Research Laboratories, PIRL)"라 한다.	제2조(명칭) 연구원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연구원(POSTECH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IAI)" 이라 한다.	연구원 명칭 변경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정보통신분야를 선도하는 첨단연구를 수행하여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3조(설립목적)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학제간 융복합 연구 및 산학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비학위과정의 교육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하여 연구와 교육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제4조(직제)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필요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소원은 직원, 전임연구원, 계약직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제) ① 연구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에는 행정팀 및 연구부, 교육부, 센터(분원)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④ 하부 조직은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하고, 하부 조직의 장은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독립채산기관 운영 규정 반영
제5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연구소의 사업수입, 교육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된다. ② 연구소의 예산 및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년도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재정자립화 및 특별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도말 잉여금중 일부를 특별사업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	제5조(참여 교원) 학제간 융복합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분야 교원은 연구원의 목적 사업으로 유치한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원) ① 연구원에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전임교원과 연구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 행정인력으로 직원, 계약직원,	제4조 3항 이동 및 내용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p>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운영위원과 소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연구기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 장단기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주요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제규정, 운영제도 및 주요방침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5. 정보통신대학원과의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소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7. 연구원의 채용, 승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p>연구계약직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전임교원 및 연구계약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과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을 따른다. 2. 계약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원 인사세칙”을 따른다. <p>② 연구원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7조(업무처리기준)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결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인사 및 지침설정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 발생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 <p>② 연구소 업무 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7조(재정운영) ① 연구원의 재정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 및 교육 수입과 기타 수입, 운영수지차액, 기금 등으로 편성한다. ③ 재정자립화 및 특별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p>제8조(시행세칙 등)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은 소장이</p>	<p>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p>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따로 정한다.	<p>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여 연구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운영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사업계획 2. 예·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 3. 자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하부 조직에 관한 주요 사항 5. 자체 내규, 운영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6.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운영 사항 	
제9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p>제9조(업무처리기준)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업무 중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결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하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사 제도에 관한 사항 4. 채무부담 발생 원인 행위에 관한 업무 5.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업무 <p>② 연구원의 업무 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제10조(시행지침)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등은 규정관리 부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서의 협조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